

2000. 8. 11

“일, 군위안부 국제법 의무 불이행”

유엔인권소위에 “배상·책임자 처벌 따라야” 보고서
7개국 여성단체, 히로히토 일왕 국제법정 기소키로

[도쿄 제네바=한승동 특파원, 연합]
일본 정부는 2차세계대전중 운영한 군대위안소와 관련해 국제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유엔 인권소위의 특별보고관인 게이 맥 두걸이 9일 밝혔다.

그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소위 연례회의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군대위안소 설치에 대해 사과하는 일부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법적 책임을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희

생자에 대한 법적 배상도 않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했다. 보고서는 군대위안부가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협약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1999년 6월 국제노동기구가 내린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희생자에 대해서 법적 배상을 비롯한 완전한 보상과 함께 책임자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중인 신혜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국제협력위원장은 이날 오는 12월7~12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에서 남북한·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대만·일본 등 7개국 여성 인권단체들이 1945년 당시의 국제법을 적용해 고 히로히토 일왕을 기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또 “일본은 95년 이후 민간기구인 아시아여성기금으로 군대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여성기금쪽은 96년말까지 약 4억 3000만엔에 이르렀던 모금액이 이후 3년간 약 1500만엔 수준에 그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금 잔고도 50명 정도의 보상금액에 해당하는 1억여엔으로 떨어져, 곧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